

2024년도 제2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4. 3. 11.(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분과위원장), 송수현, 오영주, 최태경, 홍승기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4-16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박현주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안건 1,973건(안건번호 제2024-8855호~제2024-10827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4-8855호~8857호(순번 1번~3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거래중인 사안으로,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이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 안건번호 제2024-8858호~8860호(순번 4번~6번)는 블로그에서 뮤지컬의 불법복제 영상 등 교환·판매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 안건번호 제2024-8861호~8866호(순번 7번~12번)는 블로그에 방송의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안건번호 제2024-8867호~10827호(순번 13번~1973번)는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

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다만 위 사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하여는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제2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4-1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박현주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E 위원: 제1호 안건의 해당 부분은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온라인서비스명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박현주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주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29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3,379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3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출판물을 스캔한 PDF 파일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사안이며, 총 12건임.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을 스캔한 PDF 파

일을 판매하고 있음. PDF 파일은 이메일 또는 채팅을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보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직접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지는 않으나, 게시물을 통해 연락을 취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1 채팅 등을 통하여 불법복제물을 판매함. 즉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고 그로부터 영리를 얻고자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사정 및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이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이 타당하므로 가결 의견임.

- B 위원: 순번 1번 내지 3번은 출판물의 PDF 파일의 판매 게시글로, PDF 파일은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며 이를 게시한 것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 필요성이 있으므로 가결 의견임.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3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번~6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 블로그에 뮤지컬 촬영물 등 영상 판매 및 교환을 홍보하는 글이 게시된 사안 총 4건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이 다수의 뮤지컬의 불법복제물을 판매 또는 교환하였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러한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각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으로 볼 수 있으며,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4번~6번, 뮤지컬 영상 판매 및 교환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 의견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번~6번에 대해 가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7번~12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블로그 게시물을 통하여 영상물을 제공 중인 사안이며, 총 8건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

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순번 7번~12번은 모두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복제·전송하고 있는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참석 위원 전원: 이견 없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7번~12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13번~1973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3,355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출판,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영화 '바튼 아카데미'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526번은

웹하드에서 영화 '바튼 아카데미'의 약 2시간 13분 전체분량을 유료로 판매 중인 사안임. 2024. 2. 21.에 개봉한 미국 영화임.

(영화 '아가일'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569번은 웹하드에서 영화 '아가일'의 약 2시간 19분 전체분량을 유료로 판매 중인 사안임. 2024. 2. 7.에 개봉한 미국 영화임.

(웹소설 '나는 재벌집 청소부'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955번은 웹하드에서 웹소설 '나는 재벌집 청소부' 전체 회차를 유료로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1. 31.~2023. 10. 20.까지 연재된 국내 웹소설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심의 안건을 보면 공표된 지 5년이 지난 저작물도 보임. 가급적이면 최근 저작물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진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박현주 전문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순번 13번~1973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3번~1973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4-8855호~8857호(순번 1번~3번)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4-8858호~8860호(순번 4번~6번)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4-8861호~8866호(순번 7번~12번)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4-8867호~10827호(순번 13번~1973번)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이 제2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4년 제2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3. 18.

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원 송수현

위원 오영주

위원 최태경

위원 홍승기